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1,424,842	14,742,745
일반회계	431,313,855	12,939,416
특별회계	60,110,987	1,803,330
공기업특별회계	30,791,670	923,75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791,670	923,750
기타특별회계	29,319,317	879,580
수질개선 특별회계	7,567,565	227,027
주택사업 특별회계	4,791,463	143,74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33,648	28,009
자활기금 특별회계	2,070,794	62,124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0,561,273	316,838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20,180	24,605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73,282	5,198
기반시설 특별회계	34,186	1,026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366,926	71,00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630,639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한도액은 15,500,000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4,742,745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